

관리단체 운영 규정

제정 2021. 06. 09.

개정 2021. 12. 21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목적) 본 규정은 남양주시시체육회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종목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회의 종목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 본회는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종목단체에 통지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1. 관리단체 지정 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본회가 해당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② 해당 종목단체 임원·선수 및 기타 관계자(이하 “종목단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본회 가입 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5조(관리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관계자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② 종목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 · 사무 공간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.

③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종목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.

④ 종목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리위원회 설치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(중재)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
(개정 2021. 12. 21.)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제7조(위원회의기능) ① 위원회는 종목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
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
3. 법제·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

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
5. 종목단체 규약(규정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

② 위원회는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제반사항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.
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 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. (신설 2021. 12. 21.)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1. 12. 21.)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시 위원장을 선정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